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-154호

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행정예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359호(2008.10.16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제2011-51호(2011.02.17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127호(2012.05.17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65호(2013.10.31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2호(2014.01.29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33호(2014.04.03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79호(2016.06.30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20호(2016.10.13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
2.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

2017년 1월 26일

서울특별시장

1. 예고기간 : 2017. 1.26 ~ 2017. 3. 7(40일간)
2. 예고방법 : 서울시보(공고) 게재(서울시 홈페이지 <http://www.seoul.go.kr>)
3. 예고목적 :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
4. 의견제출

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청 또는 금천구청에 방문,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의견(별첨 의견제출서 작성)
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 등
- 기타 필요사항 등

나. 의견제출처 및 문의(관계도서 열람) 안내

- 서울시청 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(태평로1가 31)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
(전화 02-2133-7223, 팩스 02-2133-0754)
- 금천구청 :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0(구로구청) 도시계획과
(전화 02-2627-1562, 팩스 02-896-6322)

별첨 : 의견제출서(양식) 1부.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예정된 처분의 제목 -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제에 따라 행정예고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